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윤석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3
----------	------

발의년월일 : 2015. 06. 11.

발의자 : 김동규, 김재국, 김정택,  
김진희, 나정숙, 박영근,  
손관승, 신성철, 유화,  
윤석진, 이민근, 이상숙,  
정승현, 주미희, 홍순목

### 1. 제안이유

가.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함

### 2. 주요내용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제4조 제5조)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을 정함(제6조 제7조)
-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제8조에서 13조)
-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대하여 정함(제14조 제15조)
- 마. 대안교육 지원 및 후견인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제16조)

### 3. 조례(안) : 불임

4.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 5. 예산수반사항 : 필요

### 6.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대안교육” 이란 청소년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 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 4.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명

2. 안산시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장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10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업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

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된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대안교육 지원 등) 시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학교 밖 청소년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국·도비 보조)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국·도비 보조)
- 안산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나. 관련조문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13조(수당), 제14조(학교 밖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6조(대안교육 지원 등)

### 2. 비용추계

#### 가. 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의 지원금 추계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25	129	133	137	141	66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3	3	3	3	3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67	69	71	73	75	355
대안교육 프로그램운영	50	51	53	55	56	265
합 계	245	252	260	268	275	1,300

#### 나.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보조금(국도비)	85	87	90	93	96	451
안산시비	160	165	170	175	179	849
합 계	245	252	260	268	275	1,300

## 비 용 추 계 산 출 내 역

### 1. 비용추계의 산출내역(2015년)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 125,000천원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 : 2,880천원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 67,000천원
- 안산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50,000천원

### 2. 연간 추계 지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4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25	○ 125,000,000원 * 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등	3	○ 80,000원 * 12명 * 3회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비	67	○ 67,000,000원 * 1개소
대안교육 지원	50	○ 10,000,000원 * 5개소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653
----------	------

제안년월일 : 2015. 7. 8.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 □ 수정이유

-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명료한 정의를 사용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규정을 둠.

## □ 주요골자

-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정의 규정 삭제 등.(안 제2조, 원안 제16조 삭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 제2항 각 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 추가(수정안 제7조제5호 신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수정안 제8조제2항 신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 삭제(원안 제14조, 제15조 삭제)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수정안 제14조 신설)

#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수립” 을 “매년 수립” 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

안 제8조 제목 중 “설치 및 기능” 을 “설치, 기능 및 존속기한” 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안 제9조제3항제3호 중 “사람” 을 “청소년 전문가” 로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항 중 “연1회” 를 “연2회” 로 수정한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수정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형성된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모임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안 제18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원안의 제18조) 중 “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으로 수정한다.

안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p> <p>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p> <p>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p> <p>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p> <p>2. “대안교육”이란 청소년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p> <p>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p>
<p>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 (생략)</p> <p>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p> <p>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p> <p>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p>	<p>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p> <p>-----</p> <p>-----</p> <p>-----</p> <p>-----<u>매년 수립</u>-----</p> <p>② (원안과 같음)</p> <p>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p> <p>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p>

원 안	수 정 안
<u>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u> <u>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u> <u>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u> <u>6.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u> <u>7.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u>8.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u> <u>9.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u> <u>10.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생략)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원안과 같음)
<u>1.~4. (생략)</u> <u>&lt;신 설&gt;</u> <u>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u>	<u>1.~4. (원안과 같음)</u> <u>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u> <u>6. (원안 제5호와 같음)</u>
<u>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u> <u>1.~3. (생략)</u> <u>4. 제1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lt;신 설&gt;</u>	<u>제8조(----- 설치, 기능 및 존속기한) ① (원안과 같음)</u> <u>1.~3. (원안과 같음)</u> <u>&lt;삭 제&gt;</u> <u>4. (원안 제5호와 같음)</u> <u>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u>

원 안	수정안
	<u>까지로 한다.</u>
제9조(구성) ①~② (생략) ③ (생략) 1.~2. (생략)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u>사람</u> 4.~6. (생략) ④ (생략)	9조(구성)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1.~2. (원안과 같음) 3. ----- ----- <u>청소년 전문가</u> 4.~6. (원안과 같음) ④ (원안과 같음)
제12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u>연1회</u> 개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④~⑤ (생략)	제12조(위원회 운영) ①~② (원안과 같음) ③ ----- ----- <u>연2회</u> ----- ----- ----- ----- ④~⑤ (원안과 같음)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교육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대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관이 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u>&lt;삭 제&gt;</u>

원 안	수정안
<p>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p> <p>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p> <p>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p> <p>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 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④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된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u>&lt;삭 제&gt;</u>
<p>제16조(대안교육 지원 등) 시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u>&lt;삭 제&gt;</u>
<u>&lt;신 설&gt;</u>	<p>제14조(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형성된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모임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p>

원 안	수 정 안
	<u>있다.</u>
<u>제17조(후견인제도 운영) (생략)</u>	<u>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원안 제17조와 같음)</u>
<u>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u>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u>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u> <u>지원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u>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u>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u> ----- --- <u>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u> ----- ----- -----
<u>제19조, 제20조 (생략)</u>	<u>제17조, 제18조 (원안 제19조, 제20조와 같음)</u>
<u>부 칙</u> <u>제2조(경과조치)</u>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u>&lt;삭 제&gt;</u>